사업방법서 별지

(구매물품보상보험)

1. 보험의 종류 : 특종-기타/기타

2. 보험종목의 명칭 : 구매물품보상보험

3. 보험의 목적

피보험자가 구매한 물품에 발생한 도난, 분실, 파손위험

4.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

가. 보험기간 :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1년 이상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나. 보험료 납입주기 :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적용계약의 경우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.

5. 배당에 관한 사항 :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

6.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
「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.

7. 모집의 제한 : 단체계약 특별약관 혹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을 첨부하는 계약에 한하여 판매한다.

8. 기타

가.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 :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나.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 :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하지 아니한다.
다. 보험료의 반환 :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라. 보험계약대출 :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을 하지 않는다.
마. 보험 종목의 변경 : 회사는 보험 종목의 변경을 승낙하지 아니한다.
바.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을 부가한 계약의 운영에 관한 사항 : 아

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(1) 피보험자(상품다수구매자)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**단순한 보장내용***으로 상품 설계
* 불완전판매 우려가 적고 보험사고 입증 및 보험금 지급절차가 단순한 상품(예 : 상해사망)

(2) **보험료**는 **계약자**(상품판매자)가 **전액 부담***
* 보험료 부담이 피보험자에게 전가되지 않음을 계약자로부터 확인 받은 경우 인수

(3) **계약자가 피보험자**에게 주요 **보장내용**을 **설명**하고 **피보험자 확인***를 받은 경우 **인수**
* 가입전 설명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설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가입후 설명 및 확인